

의안번호	2218283
의 퇴 인	김준혁의원
회 답 일	2026.07.22.
추계번호	26C2256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 신설 (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)	대학의 장은 학생이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(제1항).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(제3항)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3 신설 (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학이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노동교육의 내용 및 선정 기준, 지원 규모 및 범위, 지원 기간, 단가 등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경기도는 조례¹⁾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예산은 1억 3,000만원임
 - * [참고자료] 경기도 노동교육 지원 사업 주요내용

1) 「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, 「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」

- ☐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경기도 노동교육 지원 사업 주요내용

[참고표 1] 사업 개요

○ (사업기간) '26. 3월 ~ 12월
○ (사업예산) 130,000천원(도비 100% / 민간경상사업보조)
○ (사업량) 13개 대학 노동인권 강좌 개설
○ (사업대상) 경기도 소재 대학교
○ (주요내용) 대학 내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함양 -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(학점인정) 및 특강 개설,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원
○ (추진방법) 공모를 통한 선정

자료: 경기도 제출자료

[참고표 2] 2026년도 사업 공모 결과

연번	선정 단체
1	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
2	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
3	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
4	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
5	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
6	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
7	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
8	용인예술과학대학교
9	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
10	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
11	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
12	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
13	한양대에리카 산학협력단

자료: 경기도 제출자료

[참고표 3] 사업 주요 집행내역

구분	학교별 지원 단가	예산액(천원)	결산액(천원)
2025년	- 8개 대학 80,000천원 ※ 1개 대학별 10,000천원	80,000	79,468
2026년	- 13개 대학 130,000천원 ※ 1개 대학별 10,000천원	130,000	-

자료: 경기도 제출자료